

[별표7]<개정 1989·7·18, 1994·8·23>

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(제56조제3항관련)

위 반 행 위	해당 법조문	과태료의금액
1.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	법 제65조제1호	100만원
2.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	법 제65조제2호	150만원
3. 제31조제1호 내지 제3호·제8호·제10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	법 제65조제2호	50만원
4.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도급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	법 제65조제3호	100만원
5.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태만히 한 자	법 제65조제4호	150만원
6.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겸직의 금지를 위반한 자 및 다른 건설업체에 고용된 건설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당해 건설기술자가 동조에 위반하게 한 건설업자	법 제65조제5호	100만원
7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기피·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	법 제65조제6호	150만원
8.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	법 제66조제1호	20만원
9.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	법 제66조제2호	20만원
10. 삭제<1994·8·23>	법 제66조제3호	30만원
11.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게을리한 자	법 제66조제4호	30만원